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08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이주희 · 서미화 · 김승원
최민희 · 송재봉 · 김남근
정태호 · 김기표 · 이광희
한민수 · 김동아 · 윤후덕
박정현 · 김우영 · 최혁진
황정아 · 노종면 · 이정현
조인철 · 박지혜 · 강득구
이훈기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병원 체계는 재활 중심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 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4제10호).

법률 제 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10호 중 “암(癌)병원”을 “암(癌)병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u>암(癌)병원</u> 등 의 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암(癌)병원, 방사</u> <u>선상해 치료병원</u> ----- ----- -